

#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노동자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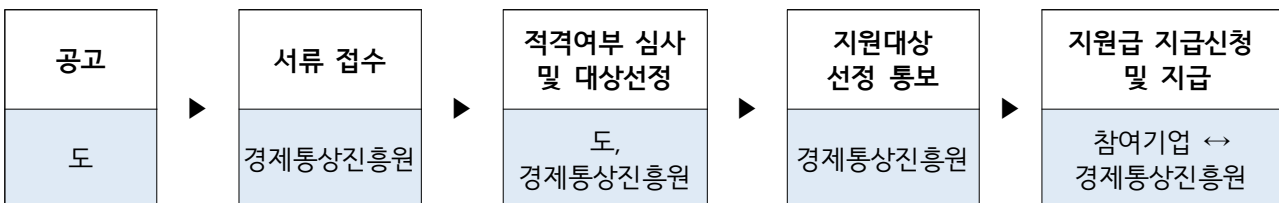
### 제외 대상 기업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기타 사치·투기 조장 및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 등 ※ 운영지침 첨부파일 확인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 지원절차



## 2. 사업 참여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3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일: [234dmswl@jba.or.kr](mailto:234dmswl@jba.or.kr)

구분	접수처
이메일	<a href="mailto:234dmswl@jba.or.kr">234dmswl@jba.or.kr</a> [단시간 청년노동자사업-기업명] ※ 이메일 제출 후, 유선전화 필수(064-805-3396)

□ 구비서류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기간:1년) ※온라인발급: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
노동자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포함)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제출서식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사업 참여신청서 ·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 · 청렴이행서약서(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 3. 사업 참여요건(기업 및 근로자 세부요건)

□ 기업 참여요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必**)  
※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 제외대상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①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②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 공급업체 내에서의 근무자는 가능

\*\*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대상 근로자를 타인(다른 사업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④ 기타 사치, 투기조장,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참여제한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 □ 참여 청년 노동자 참여요건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 제3조: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

##### ○ 지원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에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
-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 제출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4.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 5. (사업 참여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지원금 신청접수: 2025년 8, 10, 12월의 1일 ~ 10일

○ 신청방법: 메일 제출 <서식 5, 6>

○ 메일: 234dmswl@jba.or.kr

□ 지원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

※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릅니다. ※ 별도 첨부파일 확인

## 7.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관 명	연락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5-3396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서식 2>

##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동일 근로자로 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 수령 여부		

###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단시간 청년 노동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 참여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지역 내 고용 발전을 위한 일자리 통계 목적으로 활용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단시간청년노동자일자리』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업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6>

				근무기간 : - (1개월)			
				월 일	출근	퇴근	확 인 담당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                     단시간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div> <b style="font-size: 1.5em;">출근부</b>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성 명 :				21	:	:	
근무기간 :	~			22	:	:	
근무업체 :	회사			23	:	:	
출근: 0 일	연차: 0 일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월 일	출근	퇴근	확 인 담당자	1	:	:	
2	:	:		2	:	:	
3	:	:		3	:	:	
4	:	:		4	:	:	
5	:	:		5	:	:	
6	:	:		6	:	:	
7	:	:		7	:	:	
8	:	:		8	:	:	
9	:	:		9	:	:	
10	:	:		10	:	:	

※ 근로자 및 기업체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